

2022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 점검기간: 2022. 7. 20.(수) ~ 7. 22.(금) [3일간]
- 감사반원: 4명
- 점검범위: 2021학년도 학생성공과 자체 점검 결과 부적정 내용 전체

□ 감사결과

○ 총괄현황









*신분상 조치(명)									부서통보	***재정상 조치 환수액(원)
실적 부적정			기타(부서 관련)			합 계				
경고	주의	계	경고	**주의	계	경고	주의	계		
5	30	35	-	5	5	5	35	40	(주의) 1건 (경고) 1건	7,834,450

감사결과 처분서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p>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p> <p>○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연비')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교연비를 지급할 때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하고, 「'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행정사항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및 「'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무시간외 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은 교연비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및 지급계획 등을 위반하여 지급한 실적 비용에 대하여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21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따르면 교연비 지급대상자는 금오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자이며, 교연비 지급 영역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영역으로 구분하되,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원 포함)의 학생지도 활동은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타지원금 등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획」 [별표] “학생지도영역(지정선택지표) 실적인정 세부 기</p>	<p>○ 경고(5명)</p> <p>- 전산주사 □□□ 등 5명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p> <p>○ 주의(32명)</p> <p>- 공업주사 ○○○ 등 30명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p> <p>- 행정주사 △△△</p> <p>- 대학회계일반직 ☆☆☆</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번 ①, ②, ③, ④ 관련 학생지도비 합계 7,834,450원 (해당금액 7,650,110원 및 2배 가산장수액 184,340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감사결과 처분서2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주관 학생지도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운영 부적정</p> <p>○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연비')을 지급할 때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하고, 「'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행정사항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및 「'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급계획 수립 시 영역별로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확정된 교연비 지급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지급계획서를 신청 받아야 하며,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 전문성, 실적의 성격, 수반되는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며, 「'21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에 따르면 프로그램 계획부서에서는 책임하에 학생지도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계획」 [별표] “학생지도영역(지정선택지표) 실적인정 세부 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실적은 해당부서의 공문·일지, 결과보고서 등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p>	<p>○ 주의(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주사 □□□ - 전산주사보 ◇◇◇◇ - 행정서기보 ▽▽▽ <p>○ 부서경고 (____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혼선 방지 위하여 관련 교육 및 관리·지도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로 산정하고, 시행부서장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시행부서에서 관련 증빙자료 및 서류 일체를 보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학생지도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운영 부실 관련】 ----- ①</p> <p>- _____은 "2021학년도  학생지도"와 "2021학년도  학생지도" 프로그램(이하 '_____ 주관 학생지도')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인정점수(2시간 기준 1점)를 충족하는 학생지도 활동내용, 일자, 장소, 지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학생지도 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참여 직원들에게 홍보물 배부 및 학생 안내 위주의 학생지도 임무를 부여함은 물론, 인정점수 기준이 학생지도 종료시간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홍보물 배부 완료 후 추가 활동 사항에 별도 지시사항이 없어, 【붙임2-1】 "_____ 주관 학생지도 인정점수 시간 미충족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에 조교  등 30명이 '홍보물 배부 완료 시 학생지도 활동 종료(완료)'로 오인하여 총 73회 인정점수 미충족 시간을 학생지도 실적으로 제출하는 등 참여 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에 혼선을 야기한 사실이 있고,</p> <p>【학생지도 장소 근무장소 임의변경 관련】----- ②</p> <p>- _____ 전산주사 은 "2021학년도   학생지도"와 "2021학년도   학생지도" 프로그램에 계획된 장소에서 학생</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나, 학생지도 활동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_____ 내에서 학생지도를 실시하고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총 24회 실적을 제출하는 등 【붙임2-2】 “◆◆◆◆◆◆◆◆◆◆ 학생지도 활동 근무장소 임의변경 현황”과 【붙임2-3】 “□□□□□□□□□□ 학생지도 활동 근무장소 임의변경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에 전산주사 □□□ 등 직원 3명은 ‘학생지도 참여 직원들의 서명부 작성 안내·관리, 홍보물 배부, 학생지도 활동 안내, 기타 문의사항 답변 및 학생지도 과정에서 접수되는 학생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총괄 실무자 역할의 명목으로 ‘학생지도 프로그램 계획에 정해진 내용과 장소’에 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_____ 내에서 학생지도를 실시하고 학생지도일지에는 프로그램 계획에 정해진 장소에서 학생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작성하여 총 72회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p>	